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53호 2018. 4. 2.(월)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공주시의회 제1호 공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 ..... 2

**【공 고】**

제2018-522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제2018-531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제2018-536호 공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

제2018-586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제2018-587호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6

제2018-589호 공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2

제2018-590호 공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7

제2018-597호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사업 완료공고 ..... 68

제2018-617호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제2018-618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75

제2018-621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4

제2018-626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3

**【고 시】**

제2018-4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42

제2018-46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44

제2018-4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46

제2018-49호 공주문화관광지(유원지)해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48

제2018-50호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 152

제2018-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54

제2018-5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56

제2018-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8

제2018-67호 장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161

제2018-6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170

회 람							
--------	--	--	--	--	--	--	--

## 《시 보 발 행 안 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주시의회의장                      윤    홍    중

2018년    4월    2일

공주시의회 예규 제1호

### 공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상담창구 운영)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의정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 각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여 구분 없이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의정팀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자체 또는 공주시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의원 및 소속 직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또는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의정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①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해 징계부서에 징계의뢰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의뢰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성희롱·성폭력의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

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국 장	의 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일	20 . .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small>※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small>	직 급		성 별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small>※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small>				
요구사항 <small>※ 조사를 원하는 경우</small>	1. 성희롱 · 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small>※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small>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국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제작·구입하는 고마 열차 명칭, 이용료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고마열차 명칭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제10호)
-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 규정 마련 (안 제15조제1항제5호)
-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장)
- 고마열차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2조)
- 고마열차 열차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전화: 041)840-8086 / FAX: 041)840-3719

####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마열차”란 문화재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의 제목 “보칙 ”을 “고마열차 운행”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운행구간 및 시간) 시장은 고마열차의 운행 노선 및 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눈, 폭우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① 고마열차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이용권은 매표소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다.

제23조(환급) 이용료의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아동(보호자 1인당 최대 2명)

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  
까지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제25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마 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고의로 고마 열차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고마 열차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아동
개 인	3,000	2,000	1,000
단 체	2,400	1,600	800

※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서류(해당 신분증 등) 제시할 경우 면제 및 감면

- 아 동 : 만 12세 이하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어 른 : 만 19세 이상
-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 단 체 : 20명 이상

[별표 3]

## 이용료 환급기준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및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당일 탑승시간 전 취소 ○ 탑승시간 이후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 환급 불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5. (생략)</p> <p>②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제8장 <u>보칙 (조문이동</u>  <u>2017.4.17.)</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고마열차”란 문화재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u></p> <p>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제8장 <u>고마열차 운행</u></p> <p><u>제21조(운행구간 및 시간) 시장은 고마열차의 운행 노선 및 시간</u></p>

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눈,  
폭우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안  
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운행을 금지할수 있다.

<신 설>

제22조(이용료) ① 고마열차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권은 매표소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다.

<신 설>

제23조(환급) 이용료의 환급 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  
하의 아동(보호자 1인당  
최대 2명)

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수급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신 설>

<신 설>

제21조 ~ 제23조 (생략)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제25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  
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  
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마 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  
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고의로 고마 열차에 손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실제비용  
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  
다.

제9장 보칙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18-531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이 어렵거나, 기피하는 유해야생동물을 대리포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나. 야생동물을 대리포획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준(운영시기)을 정함(안 제7조제1항)
- 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2항)

### 3. 입법예고기간 : 2018. 4. 2. ~ 2018. 4. 22.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2일까지 공주시장(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19 FAX : 041-840-2329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및 포획보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품종별 농작물 수확시기 및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7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기 및 포획보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품종별 농작물 수확시기 및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u></li> <li><u>2. 고라니: 1마리당 3만원</u></li> </ol>

공주시 공고 제2018-536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복지 선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10조(이용자의 제한)제1호 “정신질환” 문구 삭제
-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제2조)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삭제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4. 2. ~ 4. 23.(21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나. 보내실 곳: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8153 FAX: 840-2310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감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1. <u>감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p> <p>2. ~ 4. (생략)</p>	<p>제10조(이용자의 제한) -----</p> <p>-----</p> <p>-----</p> <p>-----</p> <p>-----</p> <p>-----</p> <p>-----</p> <p>1. <u>감염성 질환</u>-----</p> <p>-----</p> <p>2. ~ 4. (현행과 같음)</p>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설의 이용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p>1. <u>감염병질환자</u></p> <p>2. <u>정신질환자</u></p> <p>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p> <p>③ (생략)</p>	<p>제5조(시설의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u>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u></p> <p><u>&lt;삭제&gt;</u></p> <p>3. -----</p> <p>----- 사람</p> <p>③ (현행과 같음)</p>

공주시 공고 제2018-586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사무의 위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 방역 소독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불법 농지 전용에 관한 업무를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한편,
- 기존에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일부 신설
  - ① 신설사항(방역소독,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분야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제정 목적
보 건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임 근거 규정 마련
산업경제	6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

- ② 기타사항(별표에 규정된 근거법령 수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70 / FAX: 041-840-230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 041-840-2070)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ㄴ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 □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 조의3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3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기초연금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보 건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분야별	일련 번호	건명	근거법령
민원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7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재정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3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20조 공주시시세기본조례 제2조
	6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분야별	일련 번호	건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36조
	4	빈집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
	5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접수 및 현지 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7	농지에서의 불법개발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업경제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2	입산신고수리	
	3	산불예방 및 진화	
	4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조례 제5조
	5	지원금액 30,000천원 미만의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6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분야별	일련 번호	건명	근거법령
수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건설	1	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	도로법 제23조
	2	보도 잡초 제거	도로법 제23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문화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3	기초연금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민 원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2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재 정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3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수리	건축법 제36조
산업경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4	자경증명 발급(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50조
	5	입산신고수리(중학동 제외)	
	6	산불예방 및 진화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분야별	일련 번호	건명	근거법령
건설	1	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	도로법 제23조
	2	보도 잡초 제거	도로법 제23조
환경관리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동 제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 신·구조문대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1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 신 설 >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명	근거법령
민 원	7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명	근거법령
민 원	7	7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 3조, 제16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1	건 명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55조, 제61조
제	정	제	1	건 명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55조, 제61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3	건 명	지방세 납세 증명 (다만, 음·면 신청분에 한정함)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2조
제	정	제	3	건 명	지방세 납세 증명 (다만, 음·면 신청분에 한정함)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2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4	건 명	시세 징수 지원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	정	제	4	건 명	시세 징수 지원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5	건 명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공주시시세기본 조례 제5조
제	정	제	5	건 명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공주시시세기본 조례 제5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1	건 명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 징수법 제12조, 제32조
제	정	제	1	건 명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 징수법 제12조, 제32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3	건 명	지방세 납세 증명 (다만, 음면 신청분에 한정함)	근거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	정	제	3	건 명	지방세 납세 증명 (다만, 음면 신청분에 한정함)	근거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4	건 명	시세 징수 지원	근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	정	제	4	건 명	시세 징수 지원	근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분 야 별	정	일련 번호	5	건 명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공주시시세기본 조례 제2조
제	정	제	5	건 명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공주시시세기본 조례 제2조

분 야 별	도시주택	일련 번호	1	건 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	------	----------	---	-----	---------------------------------	------	--

분 야 별	도시주택	일련 번호	2	건 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	----------	---	-----	----------------	------	---

분 야 별	도시주택	일련 번호	5	건 명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	------	----------	---	-----	--	------	---

분 야 별	산업경제	일련 번호	4	건 명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함)	근거법령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제5조
-------	------	----------	---	-----	------------------------------------	------	------------------------------

분 야 별	도시주택	일련 번호	1	건 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	----------	---	-----	--------------------------------	------	-----------------------------------

분 야 별	도시주택	일련 번호	2	건 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1조
-------	------	----------	---	-----	----------------	------	---

분 야 별	도시주택	일련 번호	5	건 명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	-----	---	------	--

분 야 별	산업경제	일련 번호	4	건 명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함)	근거법령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제5조
-------	------	----------	---	-----	------------------------------------	------	------------------------------

< 신 설 >

분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 법령
산업경제	6	불법 농지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신·구조문대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건 명	근거법령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 정함)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건 명	근거법령	근거법령
민 원	2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건 명	근거법령	근거법령
재 정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 징수법 제2조, 제32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제 정	3	지방세 납세 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2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제 정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제 정	3	지방세 납세 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제 정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 법령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 법령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공주시 공고 제2018-587호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사무 위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일부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별표] 일부 삭제
  - ① 삭제사항(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당 초	개 정	개정 목적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삭 제	조례로 위임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	삭 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70 / FAX: 041-840-230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 041-840-2070)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비 고
세 무 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61조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4	이륜자동차 신고등록분 취득세 납부 신고 처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비 고
세 무 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신·구조문대비표(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u>&lt; 삭 제 &gt;</u>	
농정 유통과	1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u>농지법 시행령</u> <u>제58조</u>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u>&lt; 삭 제 &gt;</u>	
농정 유통과	2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	<u>농지법 제42조</u>		

공주시 공고 제2018- 589호

「공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 세액을 상향 조정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4. 2. ~ 4.23.(21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공주시청 세무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세무과 연락처 (☎ 041-840-8361 / FAX 041-840-2318)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조례 제 호

##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 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 ----- <u>20만원</u> ----- ----- ----- -----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이 '17.12.31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 가.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 규정 적용시 취득일이 아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요건 명확화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1년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감면요건 신설
- 나.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제1호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조례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 다.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로 법률명 개정에 따른 개정
- 마. 안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
  - 100분의100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50으로 축소
- 바. 안 제9조(자동차 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
  -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150원 세액공제하던 것을 신용카드자동차 포함 공제

## 2. 감면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4개조문)

- 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나.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라. 제7조(농업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3년)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4. 2. ~ 4.23.(21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공주시청 (세무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세무과 연락처 (☎ 041-840-8361 / FAX 041-840-2318)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 중 “등록하여” 를 “등록(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 제1호,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조례」 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으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입주자에 대한 감면)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 “감면율은 100분의 100” 을 “감면율은 100분의 50”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를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  
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  
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  
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  
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신설>

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  
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  
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  
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  
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

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③ (생략)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조례」에 따라 -----

2.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020  
년 12월 31일-----.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  
-----  
-----  
-----  
-----  
-----  
-----  
-----  
-----



후 해당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 2제1항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  
-----.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100분의 50-----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  
-----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  
----- : -----  
-----

##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사업 완료공고

공주시 웅진동 52번지 외 3필지 일원의 웅진백제 4대왕 송모전 건립공사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52번지 외 3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 명 칭 : 웅진백제 4대왕 송모전 건립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문화재과)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m <sup>2</sup> )	사 업 개 요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공원)	4,395	○ 건축면적 98.1m <sup>2</sup> - 송모전 63.0m <sup>2</sup> , 삼문 17.82m <sup>2</sup> , 전사청 17.28m <sup>2</sup>

5. 사업기간 : 2017. 1. 12.(인가일) ~ 2017. 12. 31.

## 6. 준공 토지조서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잔여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공주시 웅진동	1	52	전	3,055	1,890	1,165	공주시	
	2	327-2	답	1,944	1,033	911	공주시	
	3	328	전	1,293	1,274	19	공주시	
	4	736-24	도	198	198	-	공주시	
	계		4필지		6,490	4,395	2,095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박찬호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박찬호골목길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박찬호골목길 내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3. 입법예고기간 : 2018. 4. 2. ~ 2018. 4. 22.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2일까지 공주시장(창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창조도시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616 FAX : 041-840-2339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선도사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박찬호 골목길 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박찬호골목길”이란 공산성과 산성시장을 잇는 공간 내 박찬호 선수가 나고 자란 생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한 곳을 말한다.
- ② “박찬호골목길 시설”이란 박찬호 골목길 조성사업 지역 내 기념·전시관, 야구체험관, 박찬호 조형물,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등 모든 시설물을 총칭한다.
- ③ “마을해설사”란 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원도심 지역 내 역사와 관광문화를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박찬호골목길(이하 “박찬호골목길”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박찬호골목길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 ② 박찬호골목길의 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46-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찬호골목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위한 박찬호골목길의 활용 계획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 계획
3.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홍보, 골목길투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박찬호골목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박찬호골목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박찬호골목길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 박찬호 기념전시관
2. 체험관 : 야구체험관
3. 그 밖의 시설 : 박찬호 조형물,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등

② 박찬호골목길 내 기념전시관, 야구체험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③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박찬호골목길의 모든 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야구체험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찬호골목길 시설을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1]

## 야구체험장 이용료(제7조 관련)

○ 베팅, 피칭 요금

구분	이용요금(원)	비 고
베팅머신(10개)	1,000원	제한시간 10분
피칭머신(10개)	1,000원	

공주시 공고 제2018-618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공주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촌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공주문화예술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다.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라. 공주문화예술촌 사용신청 및 제한, 취소에 관한사항(안 제8조 ~ 제9조)
- 마. 공주문화예술촌 입주작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바. 공주문화예술촌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7조)

### 3. 입법예고기간 : 2018. 4. 2. ~ 2018. 4. 22.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2일까지 공주시장(창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창조도시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698 FAX : 041-840-2339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문화예술촌(이하 “문화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공주시 봉황로 134에 둔다. 다만,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과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촌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을 위한 오픈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입주작가(공주시에서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작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① 문화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판매공간

4. 그 밖의 문화예술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제5조(운영 시간)** ① 문화예술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 한다.

1. 신정, 설날, 추석(전·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문화예술촌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촌의 직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촌 입주작가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단장)
2. 도시재생지원센터장
3.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 신청)** ① 시장은 입주작가들의 전시회 개최가 없는 기간에 한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문화예술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입주작가 외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에 응모할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주문화예술촌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사용여부를 통보 한다.

④ 사용 기간은 1회 최장 15일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취소)** 시장은 문화예술촌의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작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 년 입주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③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계약을 하고 활동 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
2. 입주 기간
3.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입주계약에 필요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입주작가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
2. 전시회 또는 교류전에 필요한 비용
3.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재료비 등
4. 문화예술촌 활성화와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가 제13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예술촌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화예술촌의 운영현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입주작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문화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공주문화예술촌 사용·변경 신청서 (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 행사명		
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기 간	전시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 소/규 모	공주문화예술촌 1층 갤러리(봉황로 134) / 256m <sup>2</sup>	
목 적 (상세히기술)		
전시품목 (상세히기술)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2018-621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등 조례 일부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운영사항 신설 (안 제4장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 근거, 구성 및 직무, 지원 등
- 기타 일부조항을 어법에 맞는 순화된 용어로 정비함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4. 2. ~ 4. 22.(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나. 보내실 곳: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8163 FAX: 840-2310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14조 다음에 “제4장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삽입한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이하 “다문화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다문화협의회는 읍·면·동별로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국외 교류·교육 및 연수 사업

2.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다문화 협의회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중전의 제15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다문화협의회는 각 읍·면·동별 분회의 회장이 다문화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② 다문화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3. 감사 1명

③ 회장·부회장·감사는 다문화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읍·면·동 분회는 읍·면·동별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한다.

제18조(직무) ① 회장은 다문화협의회를 대표하고 다문화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기) 다문화협의회의 위원은 읍·면·동 다문화협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위촉 해제 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회의) ① 다문화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다문화협회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협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회의록) 협의회의 총무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21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된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다문화가족협의회</u></p> <p><u>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이하 “다문화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u>1.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li> <li style="margin-bottom: 5px;"><u>2. 다문화가족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u></li> <li style="margin-bottom: 5px;"><u>3. 다문화가족 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u></li> <li style="margin-bottom: 5px;"><u>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u></li> </ol> <p><u>② 다문화협의회는 읍·면·동별로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u></p> <p><u>제16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16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u></p>

<신 설>

1. 다문화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국외 교류· 교육 및 연수 사업
  2.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다문화 협의회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7조(구성 등) ① 다문화협의회는 각 읍·면·동별 분회의 회장이 다문화협의회 의 위원이 된다.
- ② 다문화협의회 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3. 감사 1명
- ③ 회장·부회장·감사는 다문화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읍·면·동 분회는 읍·면·동별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한다..
- 제18조(직무) ① 회장은 다문화협의회를 대표하고 다문화협의회 의

<신 설>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조(임기) 다문화협의회 위원은 읍·면·동 다문화협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위촉 해제 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회의) ① 다문화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다문화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 설>

제21조(회의록) 협의회의 총무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 조례의 -----  
-----.

## 공주시 공고 제2018-626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개정 사항 반영
  - 제명을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공주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공주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안 제5조, 별표)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별표, 별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 반영
  - 신고대상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의 원색사진, 설명서, 설계도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2조)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변경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4조)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을 “공주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관리 등 규정 삭제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 신설(안 제23조)
-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27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별표 1)
-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별표 3, 별표 4)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벽보, 전단지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별표3)
  - 전자게시대 수수료, 입간판 수수료, 창문이용 광고물 수수료 신설(별표3)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개정(별표4)

### 3. 입법예고기간 : 2018. 4. 2. ~ 2018. 4. 23. (21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3일까지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44 FAX : 041-840-232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

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2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이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인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

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  
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공주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

는 교통신호기가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지상권·임차권이 있는 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공주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

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조명·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조명·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

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거나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

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등)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

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

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접수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면적 10㎡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면적 50㎡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7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8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 면적 10㎡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면적 5㎡	50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 ·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재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5,5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15,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연면적 5㎡ 이하	9,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하. 벽보(10매당)	7,000원
거. 전단 (500매당)	3,000원
너. 전자게시대 (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20,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10,0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 ·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 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이하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법 제20조제1항제1 호 및 제1호의2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p>나. 현수막</p> <p>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p> <p>가) 면적 3㎡ 미만</p> <p>- 1.0㎡ 미만 8만원</p> <p>- 1.1㎡ 이상 2.0㎡ 미만 12만원</p> <p>- 2.1㎡ 이상 3.0㎡ 미만 14만원</p>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p>- 3㎡ 이상 3.7㎡ 미만 22만원</p> <p>- 3.7㎡ 이상 4.5㎡ 미만 25만원</p> <p>- 4.5㎡ 이상 5.0㎡ 미만 32만원</p>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p>- 5㎡ 이상 6㎡ 미만 42만원</p> <p>- 6㎡ 이상 8㎡ 미만 58만원</p> <p>- 8㎡ 이상 10㎡ 미만 75만원</p> <p>라) 면적 10㎡</p> <p>-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p> <p>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p>-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p> <p>-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p> <p>- 21장 이상 장당 42천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p>-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p> <p>-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p> <p>- 21장 이상 장당 25천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p> <p>라. 1년 이상 400만원</p>	법 제20조제1항 제2호	
<p>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p>	법 제20조제1항 제5호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p>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p> <p>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p> <p>3.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p> <p>4.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p> <p>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p> <p>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p> <p>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p> <p>6.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p> <p>7.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8.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p>		



[별지 제2호서식]

현수막 등 신고수리 검사인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 20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록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p>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p>사    진 (3.5×4.5)</p></div> <p>공    주    시</p>
--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 20 . . . . ~ 20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2px;">직인</span>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5항호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 20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1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92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정정보 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97-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영2리 92	2018.03.15	신축	20100202	일관번호명상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영2리 92-1	2018.03.15	신축	20100202	일관번호명상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번영동길 27-4	2018.03.15	누락	20100112	옛날 이지역에 법당이 있었다 하여 법당동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80-1, 81-1, 8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세동길 281-17	2018.03.15	신축	20111205	세동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암리 4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암읍동길 152-14	2018.03.15	신축	20110630	골짜기가 깊어 그 모양이 마치 동돌목을 만들때 사용하는 용수와 비슷하여 무성한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관번호 방식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237-1, 236-1, 266-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부새동길 36	2018.03.15	신축	20100112	부새가 무성한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관번호 방식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비송리 산7-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화대2길 16	2018.03.15	신축	20100112	바위속에 굴에서 용이 승천하였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20-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신동길 53	2018.03.15	신축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37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소외리길 16-49	2018.03.15	신축	20100112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모양이라 소외리 또는 우렁리라 한다하여 생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현리 44-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새마을 26-2	2018.03.15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정리 16-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정리 158-19	2018.03.15	신축	20100112	용정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정길로 부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478-1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문척마을길 61	2018.03.15	신축	20100112	이 지역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문화마을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 249-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군영동길 25-46	2018.03.15	신축	20100112	조선 인조때 이월의 나이 일이나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였을때 여기서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28-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리 110-10	2018.03.15	신축	20100112	보흥리를 들어오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26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성동길 28-20	2018.03.15	신축	20100112	마을 지형이 양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마성동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1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0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사는유후
여부전	여부법	여부전	여부법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에 2018. 03. 15. 고시 법 도로명주소조 제19의거 관계 공조있어거 다니서 주소로 유비기됨용.
- 공공치있거서 리하·있각상고 다에 재종 공사지 주소(소당해)에 변경치있거서 도로명주소로 여부합됨용.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포에 건물번호관 여부는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19의거서 정한 절차거 따라 신청할 수 다습됨용.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7의제7항거 관계 경변 도로명이 고시된 날사터 3년이 해난 범거 여부할 수 다습됨용.

○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 부우 종전주소관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관 지세주소에 공조있어관 재종 공사지 치당된 주소로 한용.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1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봉길 51-5 외 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위치한 공주문화관광지의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으로 사업구역 축소 등 관광지(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가. 제한지역

공주문화관광지 해제지역 일원 : 웅진동 610-55번지 일원

### 나. 제한면적

공주문화관광지 해제지역 일원 : 230,351㎡

다. 제한사유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으로 사업구역이 축소되어 관광지(유원지)에서 해제되는 공주문화관광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2018. 4. 2. ~ 2021. 4. 1.)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가능

마.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바.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축, 증축

○ 개발행위대상 중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공작물 설치

○ 가설건축물

사. 제한 제외대상 행위

○ 개발면적 10,000㎡이상의 계획적 개발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

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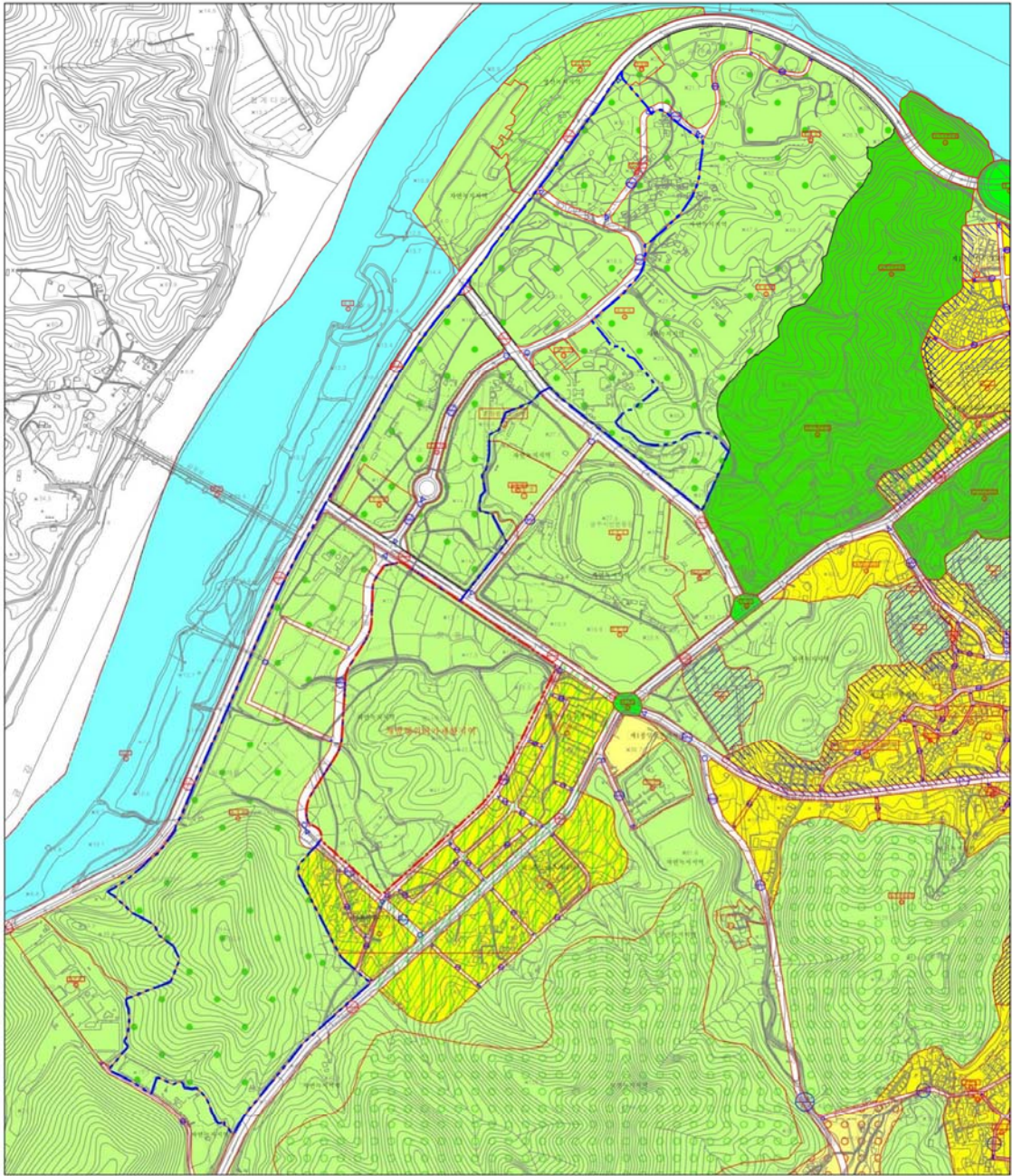
○ 아래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본 개발행위허가제한과 관련하여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도

○진동 610-55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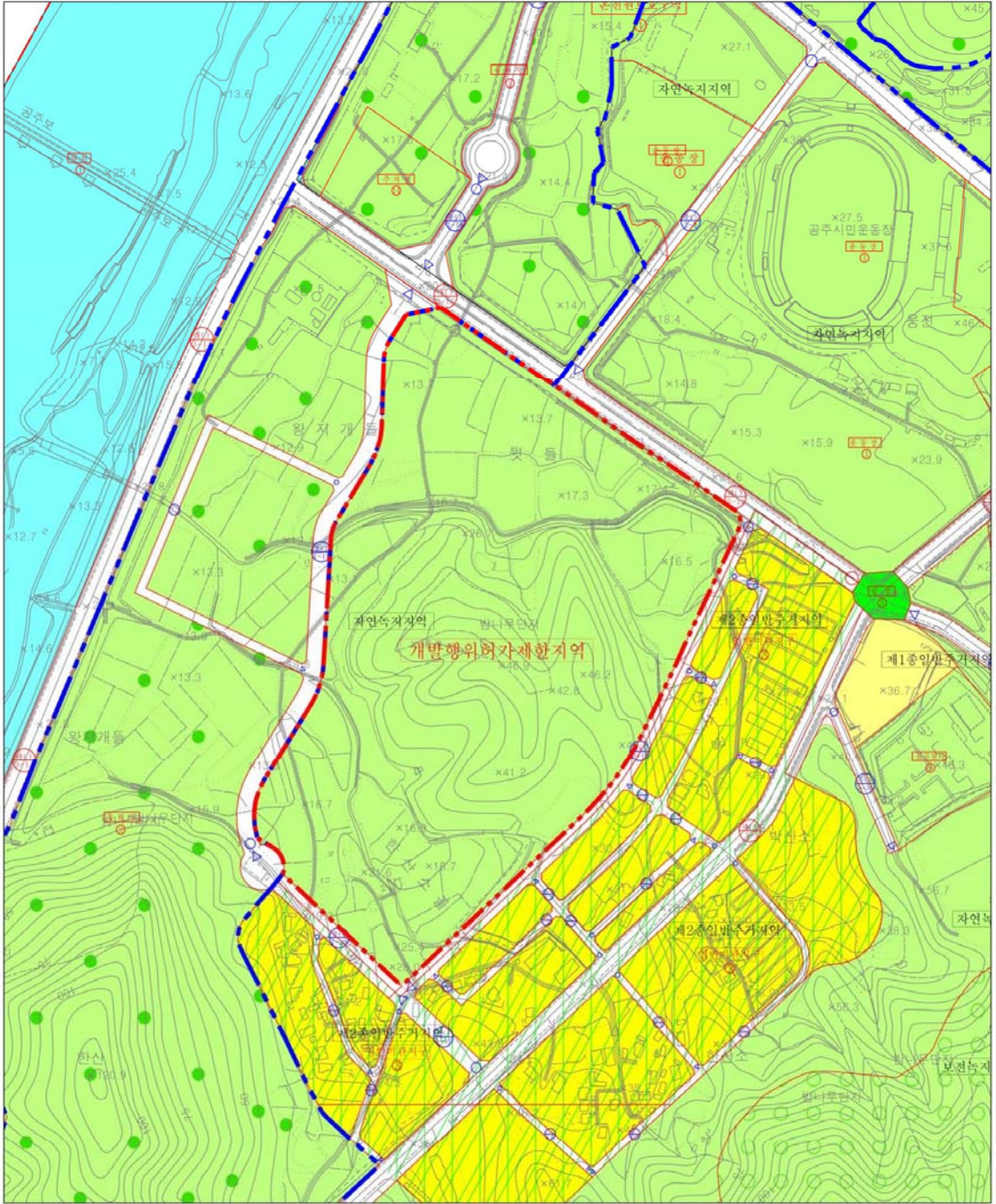
**공주 문화관광지 해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 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

0 50 100 250 500m

N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주 문화관광지



**광주 문화관광지 해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관주 문화관광지

#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02일

##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대룡1리 일원
  - 나. 면적 : 430ha
  -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무르실 공원 조성, 무르실 역사관 조성, 어린이놀이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마을 안내판 설치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 마케팅
4. 사업비 소요액 : 1,000백만원(국비 700, 도비 89, 시비 211)
5. 사업 예정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면	리						
총 계 / 7필지					3,176㎡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무르실 역사관  어린이 놀이터  무르실 공원	신풍면	대룡리	396	답	526㎡	공주시	
				397-8	답	170㎡	공주시	
				397-9	답	196㎡	공주시	
				403-1	전	321㎡	공주시	
				409-1	답	102㎡	공주시	
				397-4	답	668㎡	공주시	
				409-3	답	1,193㎡	공주시	

9. 기타 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농촌진흥과 ☎ 041-840-8688)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2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막골길 22-19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3.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인합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122-4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익로길 22-19 (신기동)	2018.03.22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번과 중복되지는 않도록 명칭 변경하기 위해 해당구역 명칭을 추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2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길 85-20	2018.03.22	신축	20100112	행정구의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문촌리 201-2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문촌로길 76	2018.03.22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문리 226-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문로길 123	2018.03.22	신축	20100112	도로 끝 지점에 정각 서판 결이 있다하여 정각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2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탐곡길 85-22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3.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4. 2.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5~30	주간선 도로	2,364	2호광장	금호동지구계	일 반 도로	금강교	'77.02.17	
변경	대로	3	3	25~35	주간선 도로	2,364	2호광장	금호동지구계	일 반 도로	금강교	'77.02.17	대로 3-4호선, 중로 2-62호선, 소로 2-55호선, 주차장1등과 일부구간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3	대로3-3	○ 일부구간 폭원 변경 -B: 25~30m→25~35m	○ 전막1길 폭원확충 및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폭원 변경

2) 공간시설

가. 광 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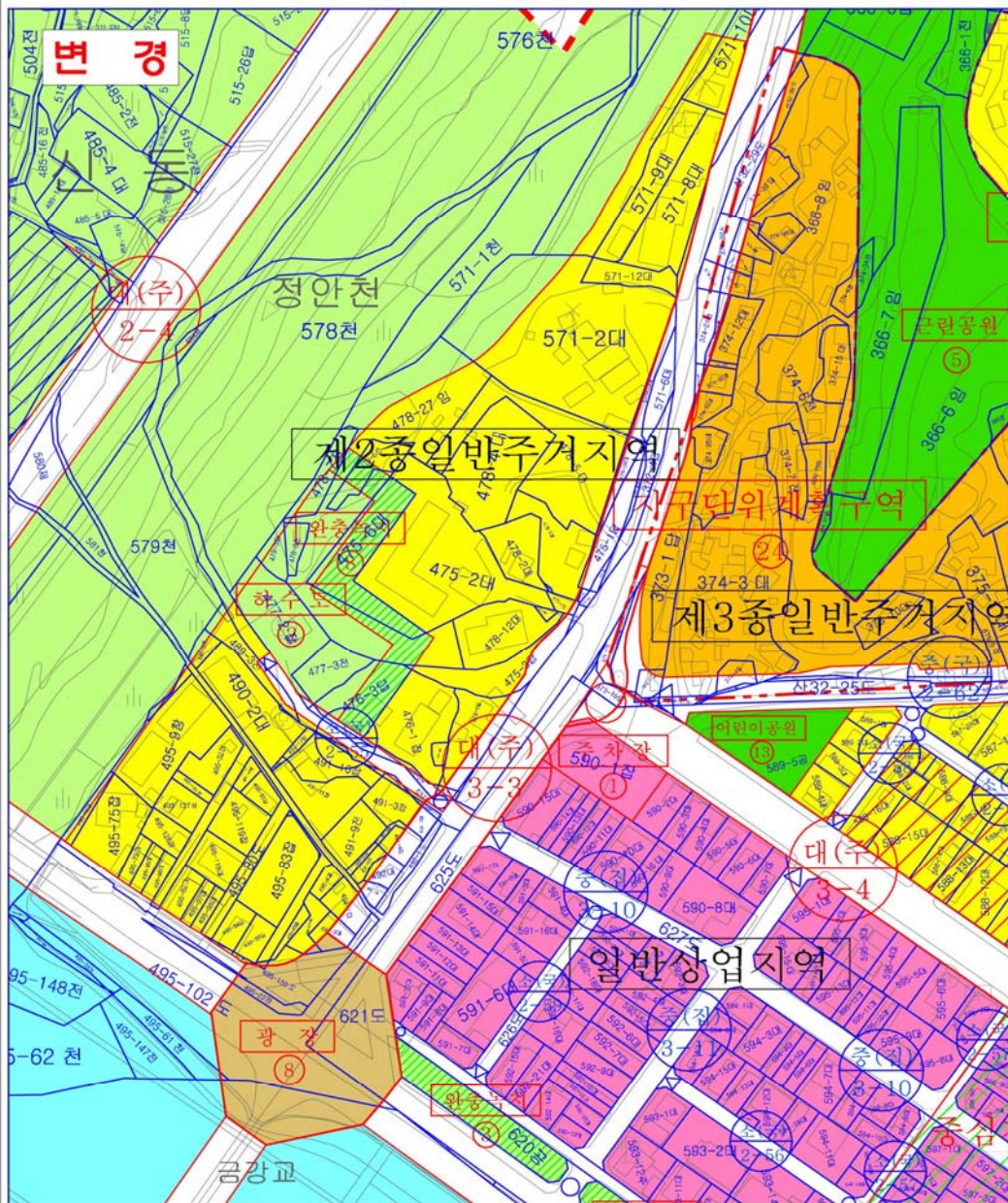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	광장	교통광장	신관동 495-6일원	5,060	증)2,259	7,319	'85.12.28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광장	○ 광장면적 증가 -A: 5,060㎡→7,319㎡(증2,259㎡)	○ 대로3-3호선 폭원확충에 따른 광장면적 증가 (255㎡) ○ 구적오차로 인한 광장 면적증가 (2,004㎡)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정책과 840-855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지도



<b>법 례</b>		도시계획시설선		일반상업지역
		지 적 선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 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광 장



## 장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와 제19조에 의거 장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4월 2일

## 공 주 시 장

### ■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장기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 87,478.0㎡

변경 - 91,734.0㎡(지적 분할측량 및 오류정정, 증:4,256.0㎡)

### 3. 농공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공주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소득기반 확충
-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공장용지를 능동적으로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성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도모

###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사업시행자 : 공주시

###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기 간 : 1985년 09월 ~ 1986년 05월 26일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개발

### 6. 주요 유치업종(변경)

기정(4개업종)	변경(12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3 섬유제품 제조업</li> <li>○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li> <li>○ C17 펄스,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li> <li>○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li> <li>○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li> <li>○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0 식료품 제조업</li> <li>○ C13 섬유제품 제조업</li> <li>○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li> <li>○ C17 펄스,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li> <li>○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li> <li>○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li> <li>○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li> <li>○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li> <li>○ C28 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li> <li>○ C32 가구 제조업</li> <li>○ C33 기타 제품 제조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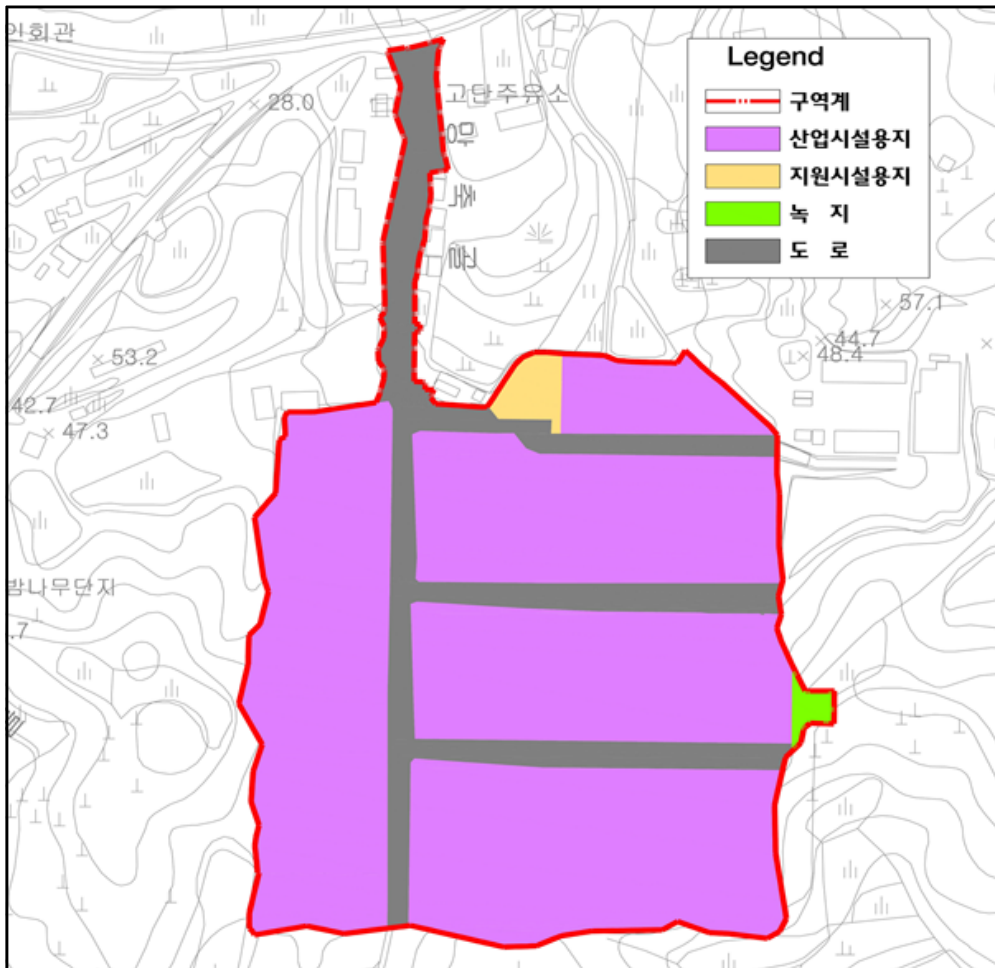
##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7,478	증) 4,256	91,734	100.0	지적 분할측량 및 오류정정
산업시설용지	71,107	증) 2,518	73,625	80.3	
지원시설용지	1,230	-	1,230	1.3	
공공 소 계	15,141	증) 1,738	16,879	18.4	
시설 도로	14,583	증) 1,738	16,321	17.8	
용지 녹 지	558	-	558	0.6	

< 토지이용계획도 >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120	16,321.0	-	-	-	3	615	8,554.0	1	505	7,767.0
중로	1	505	7,767.0	-	-	-	-	-	-	1	505	7,767.0
소로	3	615	8,554.0	-	-	-	3	615	8,554.0	-	-	-

○ 도로 결정 변경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1	12	집산도로	505	시도36	21-3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205	중로3-1	54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03	중로3-1	54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207	중로3-1	54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8.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에 비치하였으며,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실시계획(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장기농공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법인 명칭 : 공주시

나. 법인 대표 : 공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개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일원

나. 면 적 : 기 정 - 87,478.0㎡

변경 - 91,734.0㎡(지적 분할측량 및 오류정정, 증:4,256.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1985년 09월 ~ 1986년 05월 26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장기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87,478.0	증)4,256.0	91,734.0	100.0	100.0	
도시 지역	자연녹지지역	감)3,250.0	-	3.7	-	
관 리 지 역	소 계	84,228.0	증)7,506.0	91,734.0	96.3	100.0
	보전관리지역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계획관리지역	84,228.0	증)7,506.0	91,734.0	96.3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장기농공단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3,250.0	150%이하	• 장기농공단지 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506.0	150%이하	• 오류정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1,120	16,321.0	-	-	-	3	615	8,554.0	1	505	7,767.0
중로	1	505	7,767.0	-	-	-	-	-	-	1	505	7,767.0
소로	3	615	8,554.0	-	-	-	3	615	8,554.0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1	12	집산도로	505	시도36	21-3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205	중로3-1	54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03	중로3-1	54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207	중로3-1	54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 B = 12m, L = 505m A = 7,767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중로 신설</li> </ul>
-	소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 B = 8m, L = 205m A = 2,646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소로 신설</li> </ul>
-	소로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 B = 8m, L = 203m A = 3,003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소로 신설</li> </ul>
-	소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 B = 8m, L = 207m A = 2,90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소로 신설</li> </ul>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공주 장기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송선동 534번지 일원	87,478.0	증)4,256.0	91,734.0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 A : 87,478.0m<sup>2</sup> → 91,734.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기오류로 인한 면적 증가 (증:4,256.0)m<sup>2</sup></li> </ul>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산업1 ~ 산업5	73,625.0	-	73,625.0	
산업 시설 용지	산업1	20,695.0	1	6,217.0	
			2	4,773.0	
			3	2,521.0	
			4	7,184.0	
	산업2	4,045.0	1	4,045.0	
	산업3	14,885.0	1	4,679.0	
			2	2,917.0	
			3	7,289.0	
	산업4	15,091.0	1	15,091.0	
	산업5	18,909.0	1	4,880.0	
			2	5,544.0	
			3	3,479.0	
			4	5,006.0	

나) 지원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지원1	1,230.0	1	1,230.0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 가) 산업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5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3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 또는 경관기능의 식재를 할 것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나) 지원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시설용지 지원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30m 이하)	
		배 치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7. 행위의 제한

- 장기농공단지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장기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 3 . 27.

공 주 시 장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48-12 중	전의071	NJ52-13-12-07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24-7 중	전의071	NJ52-13-12-07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75 전	전의071	NJ52-13-12-07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90-6 과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90-7 과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337-1 묘	예산069	NJ52-13-11-06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108-2 묘	예산090	NJ52-13-11-09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5-1 전	예산089	NJ52-13-11-08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1 중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677-16 목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04-1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04-2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18-3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18-5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18-8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18-9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679-2 묘	예산059	NJ52-13-11-05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440-6 대	예산080	NJ52-13-11-08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41-8 묘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41-9 묘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39-3 장	예산098	NJ52-13-11-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0-3 장	예산098	NJ52-13-11-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0-6 장	예산098	NJ52-13-11-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91-1 도	전의061	NJ52-13-12-06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21 종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23 묘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24 묘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25 종	전의031	NJ52-13-12-03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31 종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43-57 대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86-17 장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86-18 도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426-4 전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1 잡	예산090	NJ52-13-11-09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12 도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57-1 묘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83-1 답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83-2 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158-2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45-3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45-4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45-6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50-4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50-6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51-1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51-2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51-3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51-4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62-2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67-3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67-4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67-4 도	예산068	NJ52-13-11-06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67-6 목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356-9 종	예산097	NJ52-13-11-09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356-10 종	예산097	NJ52-13-11-09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2-3 전	전의083	NJ52-13-12-08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81-4 목	예산087	NJ52-13-11-08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497-6 창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497-17 도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497-19 도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497-21 도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497-22 창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136-1 묘	청양009	NJ52-13-18-00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05-1 임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15-1 전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277-2 도	전의042	NJ52-13-12-04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92-3 창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92-4 도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235-1 답	전의083	NJ52-13-12-08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235-2 답	전의083	NJ52-13-12-08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화리	산26-4 목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345-5 묘	청양007	NJ52-13-18-00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345-6 묘	청양007	NJ52-13-18-00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16-5 도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177-3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45-7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45-10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45-11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49-6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49-7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49-8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1-12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1-14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1-15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1-16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1-17 도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13-10 종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43-3 원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59-2 원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677-1 목	전의09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677-2 목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677-3 창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677-4 목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4-4 종	예산059	NJ52-13-11-05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61-5 도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584-28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584-29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584-30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5-3 도	전의091	NJ52-13-12-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242-2 도	예산088	NJ52-13-11-088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 서는 공주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1-840-84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